



##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

[시행 2022. 1. 24.] [보건복지부고시 제2022-19호, 2022. 1. 24., 일부개정]

보건복지부(장애인자립기반과), 044-202-3322, 3325

**제1조(목적)** 이 고시는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'영'이라 한다.) 제16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(이하 '생산시설'로 한다.)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심사기준)** ①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제9조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
1. 신청자의 적격성
  2.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
  3. 장애인근로자 생산 참여
  4.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생산
-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지정 및 재지정 심사에 적용하며, 지정(이하, 재지정을 포함한다.)받은 생산시설은 지정 이후에도 이 기준을 항상 충족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는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
- ④ 제1항의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은 별지와 같다.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생산시설을 지정 또는 재지정할 경우,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. 단, 재지정을 할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**제3조(품목별 직접생산 확인기준)** ① 제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별지 '4.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 생산' 심사기준의 품목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품목별 직접생산 확인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'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별표 2'를 준용한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을 인정할 수 있다.
1. '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별표 2'에서 규정한 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, 그 설비와 동일한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대체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
  2. 적절한 직무 배치와 공정관리를 통해 생산시설 소속 근로자의 노동력만으로도 제품을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

**제4조(직접생산 확인증명)** 생산시설 또는 공공기관이 계약 등을 위해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제4항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증명서 발

급 없이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1항에 따른 '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'로 이를 갈음한다.

**제5조(품목에 따른 중증장애인고용요건의 특례)** ① 영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하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관공서 청사관리, 공공시설관리, 기타 공공기관이 행하는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계약 또는 대행의 형태로 위탁받아 제공하는 청소용역, 주차관리, 경비용역 등 서비스
2. 불법행위단속, 행사진행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을 계약 또는 대행의 형태로 위탁받아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 서비스

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지정받은 생산시설이 공공기관과 노무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업체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한 경우 그 승계 인원의 10/100 이상의 장애인근로자(생산시설 소속의 기존 장애인근로자를 포함하지 아니함)를 추가 고용한 때에는 당해 용역계약 수행기간에 한해 제2조제1항 제2호의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기준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.

**제6조(규제의 재검토)**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(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재검토기한)**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부칙** <제2022-19호,2022.1.24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